

남포항 태왕아너스 단지내 상가 공급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거 포항시청에 분양신고 후 2024년 12월 19일 수리됨
- 공급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동주로 335-1
- 대지면적: 13,585.5㎡ 중 근린생활시설 161,637㎡
- 건축물 연면적: 48,089.4404㎡ 중 근린생활시설 329.3120㎡
- 건축물 총별 용도: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401층)
- 공급규모: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1개동, 5개 점포(호)
- 주차대수: 총 425대 중 근린생활시설 2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임.
- 공공 후 소유권 이전형태: 잔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등기
- 공급내역 (단위:㎡, 금액: 원)

동	호실	분양면적				대지면적	분양가격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포함)	계약면적			대지면	건축비	부가가치세	분양가격
401동	101	65.6400	4.4237	70.0637	34.3896	70,760,000	206,430,000	20,643,000	197,833,000	
	102	41.4000	2.7901	44.1901	21.6900	44,630,000	130,200,000	13,020,000	187,850,000	
	103	41.4000	2.7901	44.1901	21.6900	44,630,000	130,200,000	13,020,000	187,850,000	
	104	41.4000	2.7901	44.1901	21.6900	44,630,000	130,200,000	13,020,000	187,850,000	
	105	118.6800	7.9980	126.6782	62.1777	127,940,000	373,240,000	37,324,000	538,504,000	

- 소유권 세부위치는 현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동주로 335-1)에서 확인 가능
- 공급규모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대신 넓이 표시 방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업으로 접수)기 바람.
- ※ 평형한상방법: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분양금액은 각 단지내 상가 면적, 위치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으나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상기 분양금액에 각 단지내 상가 점포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점포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상기 점포별 건축면적은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등), 콘리실(MDF, 방제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점포별로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점포별 대지면적은 단지내 상가에 대한 대지를 점포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단지내 상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기계실, 전기실, 복도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
- 주차장면적배분은 용도별 법적 기준에 의해 배분,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음
- 단층 납입일외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 납입일청에 사전에 숙지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인에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잔금은 입점시점일 또는 실 입점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입점시점보다 실 입점일이 빠른 경우 선납할인은 인정하지 않음.(납입일외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상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종류 및 시설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허가권청의 관련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공급방법: 점포별 수익계약 방식

■ 공급조건

- 1) 신청자격 제한 없음.
- 2) 개점 업종에 대한 인-허가 및 추가 시설은 입점자 책임으로 당사에 요구할 수 없음.
- 3) 신청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는 제한 없음.

■ 시설별 사용 용도: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

시설용도		경관용도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연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유희점 및 세탁소(공공이 부설된 것을 제외)와 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등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유희점, 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죽·근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종교집회장 등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음.

※ 기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업종을 참조 바랍니다.

※ 상기 업종은 안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입점 업종별 허용 용도에 따른 규제 사항이 상이하여 이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향후 미확인으로 책임을 사한후적 및 시공사에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 고음급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며, 관할경찰청 인-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니 않음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하는 용도의 시설은 제외함.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디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이의를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바닥면적합계(저포 인접면적 등)에 관계하여 합계면적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나, 확인 후 계약진행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기간	구비서류	장소	
계약	2024.12.27(금) ~ 10:00~17:00	본인	1. 본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2. 본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포함은 국내거소 신고증 1부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3.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계약금은 현상 수납이 불가하므로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동주로 335-1 남포항태왕아너스 단지내 상가 105호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 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상기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분양사무실 비치)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단지내상가 계약 위임용) 3.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외포함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 등록증 5. 본인과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등	
		법인	1.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계약금은 현상 수납이 불가하므로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직인 및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상기 제반 서류는 계약체결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반 서류는 호별 접수 또는 계약 시 각각 1부씩 필요함
- ※ 대리인 신청 및 계약 시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위임인의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 「부동산 거래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10%)	잔금(90%)
납부일자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계좌	금융기관: 하나은행 150-910066-99704, 예금주(주최도시보증공사)	

- 계약금, 잔금 납부 계좌는 동일계좌이며 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 바람.
- 당점된 점포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잔금 납입일외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납입일에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입금 시 총·점포 및 계약자 성명을 철히 기재하여야 함.

■ 대출관련

- 대출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항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법률상 변경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계약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잔금 납부에 있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나 계약자 본인 이 직접 금융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람.

■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음.
- 계약금 10% 납부 이후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가능함.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물건 취득 예정 시(분양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는 불가능함.
- 분양권 전매 시 인정된 일자에 전매인행 및 서류수령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금 미납, 연체료 미납시에는 전매는 불가능함.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 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어야 함.

■ 입점예정일: 잔금 완납일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고 수인·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2.11.개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공정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본인 책임으로 계약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전 모집공고 및 상가용도, 현상여건, 안내문 및 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단지 내 상가를 관개변형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용도-면적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분양 질서를 해지거나 부정행위(타인 명의도용 등) 등으로 계약위반을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 전액의 금액 회수에 귀책되므로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선납금 지급 시, 상가면적, 분양가격 등은 사업주체에서 의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연락처, 이메일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 (주민등록증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체결 전 모집공고 및 상가용도, 현상여건, 안내문 및 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단지 내 상가를 관개변형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용도-면적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상기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권리, 용도변경, 인-허가에 따른 시설차 사용 등)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이 없음.
- 상기에 대한 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사업자등록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무계산서를 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부가치세 환급 가능성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단언에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자는 지정된 기일에 단층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등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파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함.
-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완료 시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언하여 함으로써 상가면적의